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591(본소), 2020나1723(반소) 판결 [대여금
등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591(본소), 2020나1723(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소1166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변론 종결 2020. 10. 23.

판결 선고 2020. 12. 1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소11666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72,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비용은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9. 10. 2000만 원, ② 2005. 3. 24. 1500만 원, ③ 2005. 11. 14.

1000만 원, ④ 2006. 3. 10. 2000만 원, ⑤ 2006. 4. 26. 1000만 원, ⑥ 2007. 4. 30. 2000만 원,1)

⑦ 2008. 7. 22. 2000만 원2) 합계 1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2. 4. 3.까지 변제한 돈을 정산하면, 위 6, 7번 원금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와 그 동안 10년 넘게 돈 거래를 하면서 이자율은 구두로 정하였고, 피고가 원금을 변제할 때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빌려 준 순서대로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동안의 미납 이자는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여 원금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원고의 2019. 12. 9.자 석명준비서면 2.항 참조).

나. 피고 주장

-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
 - 3) 원고는 피고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2011.경 피고에게 계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동안 매월 약 8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수령해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 돈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결국 최종 변제일인 2012. 6. 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연 12%의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3290만 원을 초과 변제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2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6.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1) 원고와 피고가 대여 원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대여금의 이자율, 피고의 수년간에 걸친 변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충당 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그 동안 금전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원고가 기재한 수첩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0. 4. 3.	[피고]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지만 내 조그만 소망은 이자가 낮은 곳을 찾아봐주면 좋겠어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게. 이자도 못 내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니 이리 답답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끝까지 내게 베풀어준 언니께 이리 청해봐요.
2010. 5. 30.	[원고]소식은 없고 1월 달부터 이렇게 밀려버리면 나는 어디서 만들어서 해결해주느냐고.올케한테도 이자 돌려준다고 해놓고 500씩이나 이자를 밀려서 짜증내는데 전번 왔을 때 해결해줄지 알았는데 이래저래 가버리고 벌써 또 4달째 밀리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
2010. 5. 31.	[피고]멀리있다 나몰라하는거 절대 아니야. 두다리 쪽뻗고 잔적 없어. D아빠한테도 내가 잘해보려다가 이자 돈 빌린게 있다 이야기 해놨어. 지금 어찌 못해서 그러는거고. 친정아버지께도 말해 돈 알아봐달라고 했어.6월 초에 아버지가 조금 보내신다니 이자부터 보내볼게.
2010. 8. 31.	[원고]
2010. 9. 3.	이제나 저제나 소식 기다리다 답답해서 갈수록 힘들어서 이젠 올케하고까지 입장 난처해져, 형편이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밀린 것 못해줬더니 사이가 먹먹해졌어. 아직 4월 이자도 정리 안된 것 알고 있어. 원금도 해결해 줘야할 상황인데 이자까지 신경쓰게 할 줄 몰랐어. 빨리 정리 좀 해줘.내 돈 이천은 지금 급해. 밀린 이자하고 이천은 9월 말까지 정리해 줘. 그때 나와서 해결해줄 줄 믿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만대고 들어가버림 난 어떡하라고. 서울에선 이자 약속도 잘 지키고해서 남까지 동원해 어려운 일을 해주면 신경은 안쓰게 해줘야지.2009. 5. 31.까지 밀린 이자 580만원 2010. 5, 6, 7, 8월 이자 밀려있음 (4월 꺼 - 10만 원)
2010. 9. 3.	[피고]내가 서울 있을 때 한번도 언니에게 믿음을 못주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곳으로와 통장관리를 아이들 아빠가 하니깐 내가 더욱 힘든 것 같아. 내년에 들어감 내가 해야지.지난 세월 계획 없이 지낸 나도 한심하고 165 X 12 = 1980 웬만한 신입사원 월급인데 왜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겠어요.[원고]
2010. 12. 2.	며칠 전 보낸 거 잘 받았어. 2009. 5. 31.까지 밀린 거 580 올케이자 정리하고 2010. 7.부터 11.까지 이자 밀려있는데 남은 420으로 2개월 하고 90만원이 남네.9, 10, 11월은 아직도 밀려있어. 그렇지 않아도 올케하고 입장이 난처했는데 이번에 보내줘서 밀린 이자 해결했네. 1월부터 게 들기로 했는데 게주가 1월 달에 타면 2부로 빌려준다 했으니 C 것은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어.
2011. 1. 19.	[피고]C거 계로 이부로 돌려준다는거3) 2011. 6. 11. 계금 및 피고의 변제금으로 7번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상환 후 이자 4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는지 궁금해요. 결과 알려줘요.
2011. 3. 23.	[원고]계도 결정이 이제 났어. 계는 3월 27일부터 시작인데 3번하고 12번이 번호야. 총 14번까지 있는데 520만 원을 탄다고 하더라고. 40만 원씩 내면되니까 80만 원 보내면 되. 그리고 이자 좀 빨리 보내주고. C에 변명하기도 힘들다.
2011. 3. 27.	[피고]1번 빌려주면 내 국민으로 보내줘. C 이자 정리해서 다시 보낼게.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C이자 조금만 낮추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야.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이라 생각하고 언니가 한번 말해줘 봐.
2011. 3.	원고의 수첩에 기재된 2011. 3.까지의 피고의 이자 미납액 : 1065만 원
2011. 5. 25.	[피고]계 몇월에 끝나는지 타면 얼마 더 넣어야 하는지 알려줘요. 내가 3번 12번인데 몇 명 하는지 14명인지 13명인지 하고.타는 달은 안 넣는다 하여 27일 하나 40 넣을게. 계돈은 내 국민으로 보내줘요. 기록이 있어야 하니.6월 10일 C꺼 이자 계산하고 카드론하고 현금서비스 모두 만들어 이자 원금 갚을테니까언니 꺼는 이자 원금 나가는데로 해결해줄게. 조금만 내게 시간줘요.
2011. 6. 11.	[피고]계 몇 명이 하는지 타면 얼마 내는지 알려줘요. 지난 달 얼마 탔는지 보내줘. 이자 계산해서 다시 보낼테니. 통장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잖아.6000 빌려 36개월 이자만 6000이야. 누가봐도 미쳤다고 하지.2010년 8월까지 갚고 90 남은 거하고 계돈 탄거 하고 카드론 받고 해서 계산서 보내고 이자 보낼게. 계돈 보내줘요.[원고]빚 갚는다고 계도 들어놓고 내가 왜 또 갯돈까지 추가해서 신경을 써야되니. 또 내 책임이 늘어난 꼴인데 지난 25일 너 메일에 뭐라고 했니 6월 10일까지는 C꺼 이자 계산해서 원금까지 다 갚는다고 하지 않았니. 오늘 11일이다. 약속이란게 지켜져야 약속이지 C한테 나도 철떡같이 말해봤는데 어גיע 된다. 너 들어간 해에 내 돈 2천도 11월 달까지는 해결해준다고 하고 가지 않았니. 나도 버거운데 이자도 다달이 밀리고 우리 올케한테도 제때 이자도 못 보내고 C친구는 더더욱 이해 못한다.누가 담보도 없고 미국까지 가는데 600도 아니고 6000씩이나 남의 돈까지 빌려서 해준다고 남들은 이해 못하겠다고 하던데갯돈은 15개월인데 3번하고 13번이고 3번은 565만 원에서 3만 원 식비 떼고 562만 원 받았다. C이 갯돈타서 준다면서 왜 안 주냐고 난리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원고, 피고로부터 1068만 원 입금 받은 후 14:20 다시 이메일 발송]C이 아침부터 전화 왔는데 약속 지켜서 그나마 내 면목이 산다.계번호는 직접 계주를 못봐서 14번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타고 보니까 15번이더라. 그래서 3번 12번 13번인줄 알았는데 13번 14번이더라. 그리고 타고 나면 5만 원씩 더내고 45만 원 낸다. 소개해준 친구가 앞 번호인데 타면 빌려준다고 했으니

2010. 4. 3.	[피고]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지만 내 조그만 소망은 이자가 낮은 곳을 찾아봐주면 좋겠어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게. 이자도 못 내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니 이리 답답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끝까지 내게 베풀어준 언니께 이리 청해봐요.
	기다려보자.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으렴.원고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2) 원고는 1 내지 7번 각 대여금 중 남아 있는 원금 3000만 원의 지급만 구하면서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는 계산이 복잡하여 정산된 것으로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의 성립시기 및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지만, 위 각 대여금의 이율을 연 12%로 계산하여 변제충당한 뒤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각 대여금의 약정이율 및 이자 변제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위 각 대여금의 약정이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① 피고가 '처음에는 1.5부 이자로 본인 돈이 아니라며 빨리 갚아야 한다며 2부 이자로 빌려 갚아라, 4부 이자까지 빌려 갚아라 하며 올려받았다'고 주장한 점, ②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4. 9. 10.부터 2012. 6. 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 ③ 2010. 9. 3.자 피고의 이메일에 '165 ×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7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80만 원 + 6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 +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 + 3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의 합계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수첩에 기재된 숫자들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9. 10. 2000만 원을 이자 월 1%, ② 2005. 3. 24. 1500만 원을 이자 월 1%, ③ 2015. 11. 14.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④ 2006. 3. 10. 2000만 원을 이자 월 3%, ⑤ 2006. 4. 26. 1000만 원을 이자 월 2%, ⑥ 2007. 4. 30.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⑦ 2008. 7. 22. 2000만 원4) 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율이 연 12%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본다.

1) 1번 대여금(이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그 인정근거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이다) 피고는 2004. 10. 11.부터 2005. 7. 11.까지 10개월 동안 1번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2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의 합계 12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5. 8. 10.부터 2006.

1.까지 나머지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며, 2006. 2.부터 2006.

11.까지 10개월 동안 이자 1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의 합계 11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1번 대여금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2) 2번 대여금 피고는 2005. 4. 11.부터 2006. 1. 31.까지 10개월 동안 2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과 원금 150만 원의 합계 165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2번 대여금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3) 4번 대여금 가)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법률 제8322호로 2007. 3. 29. 제정되었고, 구 이자제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위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위 법 시행일인 2007. 6.

30. 이후부터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제정)에 따르면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6. 4. 11.부터 2008. 1. 10.까지 매월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4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14., 같은 달 15. 4번 대여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6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4번 대여금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위 이자 지급부분 중 2007. 6. 30.부터 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는 4번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6. 30. 이후로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1]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08. 2. 15. 변제한 1000만 원은 먼저 이자 7,659원에 충당되고, 원금 9,319,448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672,893원(= 10,000,000원 - 7,659원 - 9,319,448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된다.

4) 3, 5, 6번 대여금 이자 7번 대여 이전인 2008. 7.까지 피고는 3(매월 15만 원), 5(매월 20만 원), 6(매월 50만 원)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변제하였다.5) 5) 7번 대여 이후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08. 8.부터 2011. 3.까지 3, 5, 6, 7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총액: 5280만 원(= 165만 원6) × 32개월)

②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 8. 11.부터 2010. 11.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총액: 3000만 원

③ 미납이자 : 22,800,000원(= 5280만 원 - 3000만 원)

④ 그런데, 갑 제8호증에 기재된 2011. 3.까지의 미납이자가 106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 3.까지의 미납이자를 1065만 원으로 본다.

나) 2011. 6. 11.(1차 계금 수령일) 기준 잔존 원리금

① 2011. 6.까지의 미납이자 : 1065만 원 + 165만 원(4월) + 165만 원(5월) - 40만 원(2011. 5. 27. 피고의 변제액) = 1355만 원

② 피고의 2011. 6. 11. 변제액 1610만 원(= 1068만 원 변제 + 계금 542만 원)

③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000만 원은 7번 대여금 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0만 원은 이자에 충당하기로 지정 내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따라서 2011. 6. 11. 기준 잔존 이자는 745만 원(= 1355만 - 610만)이다.7) 다) 2011. 9. 7.

기준 잔존 원리금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08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는 1000만 원은 7번 대여금 원금으로 충당하여 상환완료한 것으로 하고, 80만 원은 2011. 7., 8.분 이자에 충당하여 7번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는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2011. 6. 11. 원금 1000만 원 변제 후 이자는 40만 원으로 변동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7번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을 월 4%(연 48%)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가 아래 계산과 같이 1080만 원이 된다.8) ① 2008. 8. ~ 2011. 6.까지 1050만 원(30만 원 × 35개월/2000만 원에 대한 법정최고이율은 월 2.5%인 50만 원이므로 차액은 30만 원)

② 2011. 7., 8.까지 30만 원(15개월 × 2개월,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최고이율은 월 2.5%인 25만 원이므로 차액은 15만 원)

라) 2011. 12. 6.자 585만 원

피고는 2011. 12. 6. 5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밀린 이자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 6. 11. 기준 미납이자액만 745만 원이었고 2011. 6. 이후 피고는 계불입금만 지급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에 전액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마) 2012. 4. 3. 기준 잔존 원리금

피고가 2012. 4. 3.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에 대하여 원금이 남아있는 3,5,6 대여금 중 어디에 변제한 것인지를 지정하였거나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이익이 가장 큰 6번 대여금 원금에 충당함이 타당하다.

결국 2012. 4. 3. 기준으로 원고의 잔존 채권액은 3000만 원(= 3번 대여금 1000만 원 + 5번 대여금 1000만 원 + 6번 대여금 나머지 1000만 원)이 된다.

바) 2012. 4. 30. 및 2012. 6. 5.자 각 90만 원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보일 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받은 이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11,472,893원(= 672,893원 +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9. 8.부터 원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최종 변제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6. 5.의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는 자신의 이익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독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9) 그런데,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10)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이일염

판사신상렬

별지

- 1) 원고가 올케로부터 빌려 대여함.
- 2) 피고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부탁하여 원고가 C 친구로부터 빌려 대여함.
- 3) 2011. 6. 11. 계금 및 피고의 변제금으로 7번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상환 후 이자 4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 4) 원고가 C 친구로부터 빌려 온 돈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정하였다고 한다.
- 5) 원고는 빌려 준 순서대로 피고가 송금한 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나머지 6, 7번 대여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자 계산이 복잡하여 편의상 주장하는 것으로서, 각 대여금 별로 이자율이 다르고 피고가 그 변제 총당 방법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이메일, 수첩, 송금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각 대여금의 변제 총당 여부를 검토한다.
- 6) 7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80만 원 + 6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만원 +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 + 3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
- 7) 원고는 755만 원이라고 수첩에 기재하였다.
- 8)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의 경우 피고가 7번만이 아니라 여러 건의 대여금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하는 이자를 별다른 내역 구분 없이 수시로 송금하였고, 송금내역 일부와 원고가 수첩에 변제한 것으로 정리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7번 대여금의 이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자 지급내역별로 원본 총당 여부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대여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적인 이자에서 초과지급된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